

변경 대비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백년대계 EMP50 자산배분 증권투자신탁 [채권혼합-재간접형]

- 변경 사항: ①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한도 범위 변경
 (트러스톤 글로벌주식 증권모투자신탁 [주식-재간접형] : 40%이하 → 40%미만)
- ②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일 : 2024. 3. 21.

□ 변경 내용

구분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요약정보			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1. 31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2. 29. 기준</u>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업데이트	〈신 설〉	<u>2024.03.21</u> - <u>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한도 범위 변경 (트러스톤 글로벌주식 증권모투자신탁 [주식-재간접형] : 40%이하 → 40%미만)</u>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2. 29. 기준</u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라. 모자형 구조	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한도 범위 변경	트러스톤 글로벌주식 증권모투자신탁 [주식-재간접형] : 40% <u>이하</u>	트러스톤 글로벌주식 증권모투자신탁 [주식-재간접형] : 40% 미만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한도 범위 변경	트러스톤 글로벌주식 증권모투자신탁 [주식-재간접형] : 40% <u>이하</u>	트러스톤 글로벌주식 증권모투자신탁 [주식-재간접형] : 40% 미만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	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한도 범위 변경	1) 기본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90% 이하를 국	1) 기본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90% 이하를 국



<p>자방침 및 수익구조</p> <p>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</p>		<p>내외 채권관련 ETF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, 투자신탁재산의 40% <u>이하</u>를 국내외 주식관련 ETF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, <u>투자하고</u>, 투자신탁재산의 25% 이하를 국내외 주식, 채권, 대체투자 관련 집합투자증권 중 배당, 이자 등 인컴 수익이 발생하는 ETF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합니다.</p> <p>2)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트러스톤 글로벌주식 증권모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 : 40% <u>이하</u></p>	<p>내외 채권관련 ETF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, 투자신탁재산의 40% <u>미만</u>을 국내외 주식관련 ETF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, 투자신탁재산의 25% 이하를 국내외 주식, 채권, 대체투자 관련 집합투자증권 중 배당, 이자 등 인컴 수익이 발생하는 ETF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합니다.</p> <p>2)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트러스톤 글로벌주식 증권모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 : 40% <u>미만</u></p>
<p>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</p> <p>나. 수익구조</p>	<p>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한도 범위 변경</p>	<p>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90% 이하를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, 40%<u>이하</u>를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, (생략)</p>	<p>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90% 이하를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, 40%<u>미만</u>을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, (현행과 같음)</p>
<p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</p> 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	<p>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한도 범위 변경</p>	<p>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90% 이하를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, 투자신탁재산의 40%<u>이하</u>를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고, (생략)</p>	<p>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90% 이하를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, 투자신탁재산의 40%<u>미만</u>을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고, (현행과 같음)</p>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	<p>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</p>	<p>-</p>	<p><u>2024. 1. 31. 기준</u></p>
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분리과세한도 : <u>1,200 만원</u> (공적 연금소득 제외) <u>1,200 만원</u>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 가능 (단, <u>23.1.1</u>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)	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분리과세한도 : <u>1,500 만원</u> (공적 연금소득 제외) <u>1,500 만원</u>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 가능 (단, <u>24.1.1</u>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	---
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1. 31.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제25기(2022.12.31)</u> <u>제24기(2021.12.31)</u>	<u>제26기(2023.12.31)</u> <u>제25기(2022.12.31)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2. 29. 기준</u>